

原子力法中 改正法律中, 關係重要條項

(지난'86.4.8. 국회 본회의 통과)

第2條(定義) 〈新設〉

1. - 16. (現行과 같음)

17. “國際規制物資”라 함은 原子力의 研究·開發 및 이용에 관한 條約 기타 國際約束(이하 “國際約束”이라 한다.)에 따라 保障措置의 適用對象이 되는 物資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放射性廢棄物”이라 함은 放射性物質 또는 그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物質(使用後核燃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第3條(原子力委員會) 〈改正〉 “科學技術處長官 소속하에”를……“國務總理 소속하에”……로.

第4條(委員會의 機能)

1. - 7. (現行과 같음)

8. 放射性廢棄物 管理對策에 관한 事項

9. (現行과 같음)

10. ……委員長이…… 委員會의 討議에 부치는……

第5條(委員會의 구성) ① 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 5人 이상 7人 이하로 구성한다.
② 委員長은 副總理가 되고, 委員은 科學技術處長官·動力資源部長官 및 韓國電力公社社長과 그밖에 副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는 者가 된다.

③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科學技術處所屬公務員 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

第65條(使用許可) ①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放射線發生裝置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 또는 放射性同位元素의 販賣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 일시적인 使用場所의 變更 기타 경미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總理令이 정하는 數量이하의 密封된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總理令이 정하는 容量 이하의 放射線發生裝

置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68條(許可의 取消 등)

1. (現行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 내에 그 許可받은 사용 또는 事業을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 이상 그 사용 또는 事業을 休止한 때

3. (現行과 같음)

4. 第65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3條 第1號 및 第2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現行과 같음)

6. ……第74條 第1項 또는 第98條 第2項…

7. ……第84條·第99條의 2·第101條 또는…

8. (現行과 같음)

第70條(安全管理規程) ① “保安規程”을……“安全管理規程”으로……

② “保安規程”을 “安全管理規程”으로

③ “保安規程”을 “安全管理規程”으로

④ “保安規程”을 “安全管理規程”으로

第72條(放射線安全管理責任者의 選任등) ① 第6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放射線障害의 防禦에 관한 監督를 하게 하기 위하여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放射性同位元素取扱者一般免許, 放射性同位元素取扱者特殊免許 또는 放射線取扱監督者免許를 받은 者 중에서 放射線安全管理責任者를 選任하여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放射線發生裝置의 取扱開始 전에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新設〉 第6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放射線安全管理責任者를 選任하여 放射性同位元素 또는 放射線發生裝置의 取扱開始 전에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現行과 같음)

第73條(放射線安全管理責任者등의 義務) ① “保

安規定”이 “安全管理規程”로

第75條(準用) 第20條 및 第41條의 规定은 放射性同位元素使用者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發電用 原子爐設置者” 또는 “生產業者”는 “放射性同位元素使用者등”으로 본다.

第79條(許可의 取消 등)

1. - 3. (現行과 같음)

4. 第76條 第4項……다만, 法人の 任員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現行과 같음)
6. ……준용되는 第15條의 2 第1項 및 第4項 · 第72條 또는……違反하거나 第15條의 2 第3項 또는 第74條第1項의 规定
7. ……第82條第2項 또는……
8. ……吳 第4項 · 第99條의 2 · 第101條……
9. (現行과 같음)

第81條(安全管理規程) ① – ④ “保安規程”을
“安全管理規程”으로

第82條(基準遵守義務등) ①

1. 放射性物質등의 分配
 2. (現行과 같음)
- ② 科學技術處長官은 放射性物質 등의.....

第83條(準用) 第20條 · 第41條 · 第72條 내지 第74條의 规定은 廢棄業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發電用 原子爐設置者”, “生產業者” 또는 “放射性同位元素 使用者등”은 “廢棄業者”로 본다.

第84條(放射性廢棄物의 처분 제한) 第9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이 아닌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종류 및 數量의 放射性廢棄物를 海洋投棄 · 地中埋沒 · 地層處分등의 方法으로 永久處分할 수 없다.

第84條의 2(放射性廢棄物管理基金의 設置등)

〈新設〉 政府는 放射性廢棄物 管理事業을 위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放射性廢棄物 管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은 다음 각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85條의 2의 规定에 의한 負擔金

2. 第3項의 规定에 의한 借入金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入金

③ 基金의 管理者는 基金의 運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資金을 借入(國際機構,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하거나 物資導入을 할 수 있다.

第84條의 3(基金의 運用 · 管理) ① 基金은 科學技術處長官이 運用 · 管理한다. 다만, 科學

技術處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9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으로 하여금 基金을 運用 ·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② 基金의 運用 ·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4條의 4(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각號의 事業에 사용한다.

1. 放射性廢棄物 管理에 관한 研究開發
2. 放射性廢棄物의 處理 · 處分 및 關聯施設의 建設 및 운영
3. 기타 放射性廢棄物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第85條(放射性廢棄物 發生者의 費用負擔)

〈신설〉 (내용생략)

第85條의 2(放射性廢棄物發生者 부담금액등)

〈신설〉 (내용생략)

第85條의 3(强制徵收) 〈신설〉 (내용생략)

第91條(免許) ① 다만, 第105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教育 및 訓練을 받은 者가 第26條 · 第50條 및 第72條의 规定에 의하여 選任 · 申告된 原子爐操縱責任者 · 核燃料物質取扱責任者 또는 放射線安全管理責任者の 指示 · 監督하에 이를 運轉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現行과 같음)

第92條(缺格事由)

1. - 2. (現行과 같음)

3.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 5. (現行과 같음)

第96條(制限區域의 設定) ① – ④ (現行과 같음)

⑤設置 · 운영하고자 하는 者나 放射性物質등의 廢棄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

第98條(障害防禦措置 및 보고) ① 原子力關係事業者は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措置를 하고 그 사설을 지체없이 科學技術處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地震 · 火災 기타의 災害에 의하여 原子力關係施設이나 放射性物質 등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原子力關係施設의 故障등이 발생한 때

3. 放射線障害가 발생한 때

第99條의 2(放射性物質 등의 所持 및 讓渡 · 讓受의 제한) 〈신설〉 (내용 생략)

第104條(許可 또는 指定條件)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指定에는 安全性確保의 履行을 위하여 필요한 條件을 불일 수 있다.

② (現行과 같음)

第104條의 2(聽聞) 科學技術處長官은 第17條·第24條·第35條·第40條·第46條·第60條·第68條·第79條 또는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이 매우 큰 放射線障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 및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處分의 相對方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6條(輸出入의 節次) …… 核物質 · 放射性同位元素와 放射線發生裝置의 輸出入節次는 科學技術處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0條(關係機關의 長의 同意등) (削除)

第111條(權限의 委託) ① 科學技術處長官은 이 法에 規定한 業務 중 다음 각號의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機關이나 기타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第12條·第15條第2項·第22條·第29條第1項·第38條·第44條·第53條·第58條·第62條第2項·第66條·第71條·第77條·第82條 및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의 開發

4. “第16條”가 “第16條 第1項 및 第3項”으로

② “權限”을 “業務”로

③ (新設)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받은 機關은 科學技術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委託받은 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費用을 당해 原子力關係事業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科學技術處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子力關係事業者에 대한 費用부담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118條(罰則)……

1. (現行과 같음)

2. 第11條第4項·第15條의 2 第1項前段 (第32條·第36條·第42條·第56條·第63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第49條第1項前段 ……

7. 第89條·第98條第1項 또는 第103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8. 第20條第1項(第32條·第36條·第42條·第56條·第63條·第75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第119條(罰則)

1. 第11條第1項但書 · 第20條第3項(第32條·第36條·第42條·第56條·第63條·第75條 및 第8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1條第1項但書 · 第33條第1項但書 · 第37條第1項但書 · 第43條第1項但書 및 第2項但書 · 第57條第1項但書 · 第64條第1項 · 第65條第1項但書 및 第2項 · 第76條第1項但書 또는 第8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第120條의 2(過怠料) (新設)

- ① 第9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는 50萬 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이 賦課 · 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⑤ (내용 생략)

附 則

-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后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計量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 당시 國際規制物資를 사용하고 있는 原子力關係事業者로서 이法 施行후에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의 施行 후 6月 이내에 計量管理規程을 정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986年12月31까지 在職할 수 있다.
④ (다른 法律의 改正) 韓國에너지研究所法 第7條第5號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放射性廢棄物에 관한 研究開發 및 處理 · 處分